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7월 21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김길영, 김영옥,
김준성, 선정환, 송순효,
송윤정, 유기훈, 이소라,
주무열, 한기영 의원(11
명)

1. 주문

- 제3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안건 처리 등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.

2. 제안이유

-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3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○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
○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 등

○ 출석 일자 : 2026.7.21. 화 <1일>

○ 출석 대상

[서울특별시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,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,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자

[서울특별시교육청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